

## 출판부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도서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한 출판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출판부는 가천대학교 출판부(이하 '출판부'라 한다)라 부른다.

**제3조(소재)** 본 출판부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.

**제4조(발행인)** 출판부의 발행인은 총장으로 하며, 출판부를 대표한다.

**제5조(출판부장)** ①출판부에 출판부장 1인을 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출판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출판부장은 발행인의 명을 받아 출판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6조(직원)** 출판부에 업무운영상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위원회)** ①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하고,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출판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출판부의 운영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2. 출판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출판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**제8조(업무)** 출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본 대학교에서 간행하고자 하는 도서의 출판
2.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에서 간행하고자 하는 도서의 출판
3. 본 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간행하고자 하는 도서의 출판
4.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의 출판
5. 본 대학교 교수가 간행하고자 하는 학술도서의 출판

#### 4-1-10~2 제4편 부속기관

6. 기타 출판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출판업무

**제9조**(출판계약) 저자와의 출판계약은 출판부의 발행인이 정하는 약관에 따라야 한다.

**제10조**(경비) 출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, 출연금, 출판수입 기타의 비용으로 충당한다.

**제11조**(운영세칙) 출판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판부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